

고 발 장

고 발 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상임대표 문 규 현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 정 호

- 피고발인
1. 국방부장관 서 욱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2. 기획재정부장관 홍 남 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3. 전 국방부장관 정경두
주소 불상
 4. 국방부 계획예산관 성명불상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5. 국방부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성명불상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6.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성명불상자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고발사실에 관해 피고발인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라 합니다)은 1994년 설립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 한미소파 개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변화시키는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전문적인 평화운동 시민단체입니다.

피고발인 1은 국방부장관, 피고발인 2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국가회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며, 국고금관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국방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합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국방부장관은 방위비분담금 관련 예산 배정을 요구하여 집행하는 자

입니다.

피고발인 3은 전직 국방부 장관으로서 위법행위가 벌어진 주요 시기의 국가회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4~6은 방위비분담금 관련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에 직접 관여했던 실무책임자들입니다.

2.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미군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분담해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미국의 재정적자 및 국방비 감축에 따라 미국 내 한국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1년 이래 SOFA 제5조에 대한 한시적, 잠정적 조치로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협정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이하 ‘방위비협정’이라 함)을 1~5년 단위로 체결하여 왔습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한미 소파 제5조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조약인바, 특별협정이 한시적 협정으로서 상정되었음은 첫 특별협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후 특별협정도 그 유효기간을 2년, 3년, 5년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SMA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바, 이것은 임시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할 특별법이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본말이 전도되게 운용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¹⁾

양국은 2018년까지 적용되는 제9차 협정까지는 다년간 적용되는 협정을 체결해 왔으나, 2019년 제10차 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10차례에 걸친 공식 회의와 기타 협의 및 조율을 거쳐 한국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총액 1조 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며 유효기간은 1년(2019.1.1~2019.12.31)으로 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제10차 협정은 유효기간 1년의 협정이었으므로 한미 양국은 원칙적으로 제10차 협정 종료 전 제11차 협정의 내용을 협의·확정하였어야 하나,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하는 등 한미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제11차 협정은 2020년도가 지난 2021. 1.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집행의 위헌성

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미체결 상태에서 편성, 배정, 집행된 예산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유효기간이 2019년 한 해에 한정된 것으로 2019년의 방위비분담금액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2020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편성하기 위해서는 위 제10차 협정이

1) 박기학,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 2017, 20쪽.

종료되는 2019. 12. 31. 이전에 최소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또는 심의 전에 제11차 협정을 새로 체결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적용할 제11차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으로 포함되되어 2019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인건비 5005억 원, 군사시설개선 3710억 원, 군수분야 1674억 원 등 제10차 협정과 같은 총 1조 389억 원). 이어 2019년 11월 해당 방위비분담금 예산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2. 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위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기는 하였으나, 제11차 협정이 체결될 것을 상정하고 부득이하게 제10차 협정의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11차 협정이 체결되지 못해 법률적 근거가 없고 분담금의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1차 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2020. 11. 기준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1조 389억 원 중 약 60%인 6,102억 원이 이미 배정, 집행되었고, 국방부는 연말까지 총액의 70%를 넘는 7,603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집행 등의 위헌성

(1)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법적 성격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

요한 국제조약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며, 국가 예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분담금 액수가 매우 크므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며, 1999년 발효된 제4차 협정부터는 ‘면세조항’을 추가하고 있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 내용을 심의하고 비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침해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비추어 본다면 방위비분담사업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의거한 예산 편성이 적정하고 적법한지를 당연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방위비분담사업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 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함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 방위비분담사업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끝난 뒤에 즉 예산이 확정된 뒤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처음 시행된 해를 제외하더

라도 제4차, 제5차, 제6차, 제8차, 제9차, 제10차 모두 예산심사기간을 넘겨 제출). 심지어 2020년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제11차 협정을 위한 비준동의안은 2020년 내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13] 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제출 현황

차수	서명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국회 비준동의	발효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1991-1993)	1991.1.25.	1991.1.25.	1991.2.8.	1991.2.21.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1994-1995)	1993.11.23.	1993.12.7.	1993.12.17.	1994.1.1.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1996-1998)	1995.11.24.	1995.11.24.	1995.12.1.	1996.1.1.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1999-2001)	1999.2.26.	1999.3.8.	1999.3.8.	1999.1.1.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2002-2004)	2002.4.4.	2002.4.9.	2002.4.19.	2002.1.1.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2005-2006)	2005.6.9.	2005.6.9.	2005.6.29.	2005.1.1.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2007-2008)	2006.12.22.	2006.12.29.	2007.4.2.	2007.4.2.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2009-2013)	2009.1.15.	2009.1.15.	2009.3.2.	2009.3.5.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2014-2018)	2014.1.11.	2014.2.7.	2014.4.16.	2014.6.18.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2019)	2019.3.8.	2019.3.12.	2019.4.5.	2019.4.5.

자료: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2019.4.), 외교통일위원회, p.30;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발효일 필자 추가

사실상 국회는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제출을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편법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즉 방위비분담금액이 특별협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는 해당 연도의 방위비분담 예산을 전년도 액수를 기준으로 임시적으로 편성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로서는 정부가 편성한 방위비분담금을 심의·확정 할 법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부의 방위비분담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국회의 예산 심의가 법적인 근거(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의거하지 못함으로써 국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하더라도 그 예산은 다시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국회의 예산심의회정권이 사실상 무력하게 됩니다.

정부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방위비분담 예산 편성과 그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은 그 법적 근거인 11차(2020년도부터 적용)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즉 한국이 미국에게 지급해야 할 방위비분담 금액이 조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헌법이 정하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됩니다.

(3)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침해

헌법 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20년도에 체결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현재까지 미체결 상태이므로 당연히 국회비준동의도 받은 바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2020년 및 2021년 방위비분담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근거도,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할 법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시행될 예정이었던 2020년의 경우, 협정을 위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년도 말에 편성, 확정된 방위비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해버린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실질상 형해화하는 방식으로 중대하게 이를 침해함으로써 헌법 60조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의 범죄사실

가. 국고 등 손실죄의 주체 : ‘회계관계직원’의 구성요건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국고 등 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등).

(2)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는바, 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정하고, (가)목부터 (차)목까지 구체적인 직명을 열거한 후 (카)목에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

명을 갖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위의 높고 낮음도 불문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이고, 그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등).

(3) 소결

따라서 피고발인 국방부장관 서욱,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전 국방장관 정경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피고발인 국방부 계획예산관 성명불상자, 국방부 계획예산총괄담당관 및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위 중앙관서 장의 보조자로서 중앙관서의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자들인바, 전부 특가법 제5조의 적용대상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합니다.

나. 임무위배 행위

(1)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²⁾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제42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3조는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예산을 배정하는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위헌·위법한 임무위배 행위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각 부처에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보하며, 이 기재부의 지침³⁾에는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2)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그 자체로 법규범은 아니지만 공무원에게는 중요한 행정규칙일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3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재정 활동에 대해 행정의 재량을 인정하는 만큼 법률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3)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15쪽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16쪽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중 미국에 지급하는 군사시설개선비 중의 ‘설계감리비’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으로서 위 ‘국제부담금’에 해당합니다. 군사시설개선비와 군수지원비는 현물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협정서’ 즉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해 그 지불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부담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국방부장관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협정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지급하는 인건비와 설계감리비 및 그 밖의 군사시설개선과 군수지원비를 포함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만연히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재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위반되고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임무위배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 나아가 국방부장관은 제11차 방위비협정이 체결되지 못해 해당 방위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 요구를 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예산 배정의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관련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위비협정이 부존재하여 예산집행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장관은 1조 원이 넘는 관련 예산 총액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 임무위배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은 이상과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서 제3자인 미국 내지 주한미군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인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발인들의 상기 일련의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다. 국고 손실

피고발인들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집행한 예산액은 7,6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바, 위 집행예산은 국민들의 조세수입 등으로 조달된 국고임이 명백하고, 그 액수는 특가법의 국고 등 손실죄가 규정하는 ‘국고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라. 임무위배 및 국고 손실에 대한 인식

피고발인들은 방위비분담 예산의 편성, 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들로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부존재하여 위 방위비분담금 관련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하는 것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미국 또는 주한미군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고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마. 소결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의 근거가 되는 제11차 협정이 부존재함에도 해당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헌법,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예산 관련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제3자인 미국 내지 주한미군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인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였는** 바, 피고발인들의 상기 일련의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나아가 피고발인들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보조자로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피고발인들의 행위로 인한 **국고의 손실액**은 5억 원 이상이므로 **특가법 제5조 소정의 국고 등 손실죄**로 의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국방부 답변의 부당성

이에 고발인은 2020. 10. 20. 국방부에 군사시설개선 및 군수분야 방위비 예산 집행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20. 10. 30. 예산 집행의 근거로서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⁴⁾**를 제시하며 다년간 군사건설사업의 경우 선행 협정이 종료되어도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과거 한미가 방위비협정을 통해 지급을 약속한 현물군사건설 사업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을 제10차 협정 제7조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제10차 협정의 방위비분담금 합의액 1조 389억 원의 범위 안

4) **제10차 방위비협정 제7조** “(전략)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 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에서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처럼 이 제7조가 10차 협정이 유효 기간(2019년)이 끝난 뒤라 하더라도 2019년에 선정된 사업이라면 1조 389억 원을 넘어서까지도 그 비용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국방부가 위 7조를 근거로 1조389억 원을 넘어서 방위비분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제 10차 협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가 말하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말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상의 용어가 아니며 국가재정법과도 어긋나는 순전히 임의적인 개념입니다. 10차 특별협정 제3조에 따르면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해당 연도 말에 어떤 군사시설개선(또는 군수지원)사업이 종료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 즉 다음 연도 이월액을 가리켜서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차 특별협정 상 ‘미집행 현물지원분’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금액인 184억 원(군사시설개선비 93억 원, 군수지원 91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국가재정법상 국고로 귀속되어 지방교부세 교부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세출비용액**(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에 포함)을 **임의로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포함**시켜 그 총액을 9,079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국고 등 손실죄의 법적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자의적 주장일 뿐입니다.

5. 결론

국가 예산의 집행은 국가 운영의 근간을 좌우하는 일이자 국민 혈세를 운용하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엄격한 법적 근거와 민주적 통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따른 예산 집행은 국가 재정 즉 국민 세금이 국외로 반출된다는 점에서 헌법·법률적 근거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인 협정의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게 한 피고발인들의 범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엄중하게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 | |
|--------------|------------------------------|
| 1. 증 제1호증의 1 | 관련 보도(한겨레) |
| 1. 증 제1호증의 2 | 관련 보도(오마이뉴스) |
| 1. 증 제2호증 | 10차 방위비협정 심사보고서(외교통일위원회) |
| 1. 증 제3호증 | 국방부 2020. 11. 세출예산운용상황(일반회계)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소명방법 | 각 1통 |
| 1. 대리인 선임계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 각 1통 |

2021. 1. 13.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범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 정 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귀중